

## 『노동리뷰』 7월호 - 이슈분석

### ■ “최저임금법개정과 하도급근로자 보호”

(문무기 연구위원 · 윤문희 연구원)

-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함.
-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음.
  - ※ 기존의 적용제외 인가대상인 양성훈련생은 적용대상자로 수습근로자 및 감시·단속적 근로자를 감액적용대상자로 통합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음.
-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함.
  - ※ 도급계약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(제6조 제6항)
-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노동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

Tel: 3775-2177 E-mail : [mgmoon@kli.re.kr](mailto:mgmoon@kli.re.kr)

\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## 최저임금법 개정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

담당자	문무기 연구위원
전화	02)3775-2177

-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변호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을 실시함.
  
- 법개정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, 사용자의 책임을 확장,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회계연도 일치 등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. 이러한 법개정에 대하여 노동계는 아쉬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우려함.
  
-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의 확대 및 직상수급인의 사용자책임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.
  -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규정의 신설은 도급, 파견, 용역 근로자 등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 확보에 기여함.
  
  - 도급 등 기업간 거래시 경제적·사회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과 도급인 내지 직상수급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자 근로자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임금격차를 일정부분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음.
  
  - 하도급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에 따라 숙련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, 수습(시용)근로자라는 명목으로 적용제외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및 양성훈련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도 하도급근로자 보호에 있어 유의미한 개정임.

-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지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'임금의 최저수준의 보장'이라는 데에 최저임금법 개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.

- 하도급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의 본질적 개성을 위하여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·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 및 현실적 작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.

- 이를 위하여서는 하도급 구조 내 기업간 임금격차의 전제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및 합리적 규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함.

-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을 설정하여 근로자 보호 및 집단적 자치의 지원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계약규제 등 경제법의 규율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.